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1999년 월 일
제출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배경

- '97. 7. 1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99. 2. 5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어 경찰관서에서 운영하여 오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므로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의무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
- 지정기준 및 대상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윤락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등으로 청소년 출입이 유해하다고 우려되는 지역
- 통행금지구역 내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 : 24시간 (보호자 동반 시 예외)
-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 : 하오 7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보호자 동반 시 예외)
-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사항 신설 (제8조)

3. 근거법령 발췌

-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동법 부칙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권고(안)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 구역

-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라.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및 계절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 절차) ①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 표시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행금지구역 표시 및 안내판의 문안, 규격 등은 따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改正 標準案(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권고(안)

제 1 조 (목적)

-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 2 조 (지정기준 및 대상)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음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한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 3 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함.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함.

제 4 조 (지정절차)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함

제 5 조 (지정해제)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함.

제 6 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함
-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함.

제 7 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 8 조 (협조체제 유지)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함

제 9 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청소년보호법령 개정사항

현행	개정
< 청소년보호법 > 제25조(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u>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②지방자치단체는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u>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 내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신설 >	< 청소년 보호법 > 제25조(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_____ _____ _____ <u>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 ②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 — ③ _____ <u>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u> _____ _____ <u>정하여야 하며</u> _____ _____ ④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서장은 <u>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동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u> < 부 칙 >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미성년자 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u>

현행	개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안) > 제19조의 3(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①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 함은 윤락가 등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이라 함은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시간을 정하여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특성,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빈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구역 내에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